



신고자 보호

- | 비밀보장 |** 신고자의 동의 없이,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불가,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
- | 신분보장 |**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 차별, 경제적·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,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
- | 신변보호 |**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,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등 요청

| 책임감면 및 벌칙제도 |

-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
-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거나 공개·보도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신고자에게 신고사건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신고자 보상

- | 보상 |**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(**최대 30억**)
- | 포상 |**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(**최대 5억**)

신고방법

신고상담

- ☎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**1398**

신고방법

- ☞ 온라인 : 청렴포털-부패공익신고
www.clean.go.kr
- ☞ 팩스 : **044-200-7972**
- ☞ 우편 :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

신고요령

- ☞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하여 신고 또는 비실명대리 신고(익명신고 불가)
- ☞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,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



신고보상금 **최대 30억**
각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

국민권익위원회가
함께합니다.



신고대상



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사용, 오지급한 경우

| 허위 청구 |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

| 과다 청구 |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

| 목적외사용 | 법령·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

| 오 지 급 |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신고사건 처리절차



1

신고접수



2

신고사실 확인

담당 조사관 배정 (60일, 연장가능)



3

이첩·송부

수사기관·감독기관 등



4

조사결과 통보

조사기관 → 신고센터



5

신고처리 결과 통보

신고센터 → 신고자



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유형

보건복지분야



- 의료기관 R&D 지원금 부정수급
- 종사자 근로시간 부풀려 가산수당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
-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정수급
- 아동 허위 등록, 아동 보호시간 허위 등록, 교사 허위 등록 등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

관련지원금 |

- 기초생활보장급여, 기초연금, 사회서비스바우처 등

산업자원분야



-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허위 신청
-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재 구입 등 연구비 사적 이용
- 연구인력 허위 등록, 연구비 입금 후 타계좌로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
- 참여기업과 수행기업이 공모하여 기업 역량진단 컨설팅, 수출지원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없이 사업비 허위 청구

관련지원금 |

- 스마트제조혁신지원금, 창업지원금, 전통시장보조금, 지방투자촉진지원금, 온라인수출지원사업지원금 등



고용노동분야



-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
-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여 고용유지지원금, 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 페이백 받는 등 부정수급

관련지원금 |

- 청년일자리관련지원금, 일자리안정자금,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,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장애인근로인지원서비스, 일학습병행제 등

여성가족분야



- 허위 교사 등록, 사업 수행 실적 허위 보고 등 청소년프로그램 지원금 부정수급
- 근로자 허위 등록하여 여성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

관련지원금 |

- 방과후아카데미, 한부모가족지원금

교육분야



- 소득탈루, 서류 위변조하여 국가장학금 부정수급
- 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부정수급

관련지원금 |

- 유치원보조금, 평생교육진흥지원금